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00398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피고, 피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고현영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598336 판결

##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5,386,963원 및 그중 393,004,6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2,330원 및 393,004,6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2.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9. 2. 13. A과 사이에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은 4억 원, 대출과목은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은 2022. 2. 14.까지이다.

2)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9. 2. 13.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제1조의 보증약정에 대하여 약정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의뢰인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되거나 기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의 효력이 중단될 수 있으며, 또한 보증회수 및 보증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특히 약정인은 책임경영의무위반 등으로 기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5조(자금용도준수 등) ① 약정인과 보증의뢰인은 보증서 담보대출금의 집행계획을 기보에 제출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서 담보대출을 부동산투자, 주식매입 등 제1항의 자금집행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와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보는 제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3)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5조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년에 원자재 구매에 3억 원, 제품개발에 1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A의 대출

A 은 2019. 2.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A 명의의 계좌(갑 제9호증, 이하 ‘회사 계좌 I’이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다. 대출금 중 2억 원의 송금과 사용

- 1) 피고 B은 이에 앞서 2018년경 L으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피고들은 2018. 11. 15.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피고 C는 그날 자신의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여 L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2) 피고 B은 2019. 2. 18. 회사 계좌 I에서 A 명의의 다른 계좌(갑 제10호증, 이하 '회사 계좌 II'라 한다)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날 회사 계좌 II에서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3) 피고 C는 2019. 2. 20. 위 2)항 기재와 같이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그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L과 임차인 M의 각 계좌로 나누어 매매대금의 잔금 3억 6,000만 원과 관리비 정산금 238,000원을 송금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계좌로 취득세 429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출금 중 4,000만 원의 송금과 사용

- 1) 피고 B은 2019. 3. 12. 회사 계좌 I에서 회사 계좌 II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그날 회사 계좌 I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9. 3. 15. 회사 계좌 II에서 자신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회사 계좌 I, II의 위 각 송금거래의 거래내용란에는 모두 'N'라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 B은 위 돈 합계 4,000만 원을 A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 P에게 대여하였고, A의 위 회사에 관한 거래처원장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P은 이를 편취한 것이었고, 그 뒤 사기죄로 처벌되었다.

마. A의 공장 화재

2019. 10. 21. 인천 남동구 Q 공장건물 제2층에 있는 A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 바. 보증사고의 발생 및 일부 반환

1) 2019. 12. 23.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9. 12. 31. 원고에게 A의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2) 피고 B은 2019. 10. 14. F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그날 회사 계좌 I로 2억 450만 원을 입금하였다.

#### 사. A의 당기순손실 발생

A은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 약 1억 2,157만 원,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 약 1억 4,544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 약 5억 9,522만 원,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 약 2억 2,005만 원이 발생하였다.

#### 아. 대위변제

원고는 2020. 6. 2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93,004,63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보증료 2,382,33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제4호), 이에 한하지 않고 A의 경영과정에서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을 금지하고(제3호), 포괄적인 책임경영의무(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2억 원을 포함하여 A의 자금 2억 4,000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 위 2억 원은 자금집행계획으로 정한 원자재 구매와 제품개발로 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 금지 또한 위반하였다. 피고 B은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A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 P에게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대여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관리에 필요하였고 P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자금집행계획으로 정한 원자재 구매와 제품개발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모두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가 정한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후문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후문이 정한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 함은, 피고 B이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A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은 2017년과 2018년에 약 1억 2,157만 원과 약 1억 4,544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에 약 5억 9,522만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0년에도 당기순손실 상태가 이어졌다. 이와 같이 2019년에 이르러 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2019. 12. 23. 변제자력 부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2019. 10. 21. A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 또한 보증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핀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 위반이 보증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 B이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19. 12. 30. 회사 계좌 1로 2억 45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이고 그 반환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가 2020. 6. 2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93,004,633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추가보증료 2,382,330원 또한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제3조 제3항은 A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 제공에 따른 기본적인 보증료 외에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원고의 신용보증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 B의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B은 자신의 책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는 있으나, 피고 B이 A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의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고, 피고 B은 고의2)로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앞서 살핀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B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지연손해금의 시기 등

1) 원고는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피고 B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 정한 책임경영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이행 청구가 있던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다1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20. 6. 22.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B에게 이행 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적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2. 8.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마. 소결

피고 B은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매도하여 2019. 12. 30.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2) 피대위채권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엮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다음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2022. 7. 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들은 2018년경 피고 B 명의로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2018. 11. 15. 매수인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② 피고 C는 2018. 11. 15. 매도인 L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체확인증의 ‘받는통장 메모’란에 ‘B’이라 적었다.

③ 피고 C는 2019. 2. 20.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L과 임차인 M의 각 계좌로 나누어 매매대금의 잔금 3억 6,000만 원과 취득세 429만 원 등을 송금하였다.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는 2019. 1. 2. 현재 잔액이 645,005원이었고, 2019. 2. 18. 회사 계좌 I에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의 잔액은 131,339,791원이었으며, 2019. 2. 20. 매매대금 잔금 3억 6,000만 원과 취득세 429만 원 등을 송금한 직후의 잔액은 6,441,791원이었다. 그런데 위 계좌의 2019. 1. 2.부터 2019. 2. 20.까지 거래내역 중 피고 C가 위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없는 반면에, 대부분의 입금내역은 피고 B과 A 명의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입금내역 또한 대체로 A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들은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를 피고 B이 A의 경영을 위해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피고 B은 2019. 12. 30.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돈 중 2억 450만 원을 회사 계좌 1로 입금함으로써 2019. 2. 18. 회사 계좌 1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2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피고 B이 자신과 A의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 C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2억 450만 원은 우선 A의 자금으로 충당한 후 나중에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의 매도대금으로 대체되었는데,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고 B이 피고 C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인 2015. 5. 8.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가 그 형성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 B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대부분의 출처라 할지라도, 앞서 살핀 참조판례의 취지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반복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혼인생활이

원만치 않아 피고 B이 2019. 1.경 1달 정도 가출하였다가 2019. 3.경부터는 별거를 하였고 2020. 5. 7. 이혼에 이른 사실, 피고 C는 2019.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아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이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중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도자금 등을 투입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 뒤 이혼에 이른 정황에 비추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혼급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1) 원고가 항소장에 적은 항소취지는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95,386,963원 및 그중 393,004,6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1.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이를 제1심판결 및 청구취지와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제1심판결로 기각된 원고의 청구 중 ‘추가보증료 2,382,330원’ 전액과 ‘대위변제금 393,004,6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2.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일부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2) 고의는 의무 위반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의무의 존재, 내용 또는 포섭에 관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